서 울 특 별 시 마 포 구 의 회 제246회 임시회 (2021, 1, 28,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건설위원회전문위원 유준상

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경위

가. 의안번호: 21-7

나. 제 출 자: 마포구청장

다. 제출일자: 2021년 1월 15일(금)

라. 회부일자: 2021년 1월 18일(월)

2. 제출사유

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 폐지에 따른 인용 법령 변경(안 제1조)
- 나. 기금 존속기한 연장(안 제3조의2)
- 다.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(안 제7조제4항)
- 라. 타 조례와의 관계에 따라 정비(안 제7조제6항)

4. 관계법령

- 가.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2조의17
- 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제4조
- 다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3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개정안은

우리 구에서 설치·운용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에 근거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, 또한 동 기금 설치의 상위 근거법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,

- 먼저, 안 제1조(목적)에서 동 조례의 근거법령을 「중소기업진흥에관한 법률」제62조의17로 변경하였음. 이는 기존 근거법인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의 폐지에 따른 것이며.
- 안 제3조의2(존속기한)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 까지로 정하고 있는 바,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 상공인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동 기금의 연장이 필요해 보이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제4조제3항1)에도 저촉되는 것이 없다고 판단됨.
- 안 제7조(기금운용심의회) 제4항의 개정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의 변경이고, 같은 조 제6항은 삭제하였는바, 이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한 것임.
- 이와 같이 살펴본바 동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법령에도 위배됨이 없으며 개정의 취지가 합당하다고 판단됨.

¹⁾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【참고자료】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-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、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〈개정 2015. 7. 24.〉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〈개정 2015. 7. 24.〉
-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 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〈신설 2015. 7. 24.〉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、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 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5. 7. 24.〉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

- 제62조의17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 〈개정 2016, 12, 27.〉
- 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
- 2. 「지방재정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
- 3. 「지방세징수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
- ② 정부는 시、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수 있으며,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. 〈개정 2017. 7. 26.〉
- ③ 시、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7. 7. 26.〉
-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、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〈개정 2017. 7. 26.〉

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- 제13조(수당) ①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- 1.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
- 2.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(이하 "구의원"이라 한다)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 회에 참석한 경우
-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.